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6
----------	-------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의자 : 안민석 · 김민기 · 이상현  
이석현 · 유성엽 · 박범계  
김철민 · 윤영일 · 노웅래  
이찬열 · 김병욱 · 인재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문화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립 등”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u>수립 등)</u>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u>수립</u>)</p> <p>① ----- -----<u>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p>

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